

강원도립대학교 학생 상벌규정

(제정) 1998-06-19 규정 제031호

(개정) 1999-06-28 규정 제057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51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9장에 의한 학생 상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종류) 포상은 학업우수상, 공로상, 선행상으로 구분하고 기타 학업성적이나 품행에 따라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.

제3조(학업우수상) 학업우수상은 졸업학년에 한하여 각 학과단위로 전체학기 성적순에 의하되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. 단, 재학 중에 징계 처분을 받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4조(공로상)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공로상을 수여한다.

1. 학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
2.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

제5조(선행상) 선행이 특히 뛰어나 대내외적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행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6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근신(3일 이상 7일 이내로서 수강시키며 특별 지도함)
 - 가. 학습 및 수강태도가 불량 한 자
 - 나.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
 - 다. 단체행동에서 무단이탈 한 자
 - 라. 게시물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오손한 자
 - 마.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학생신분을 이탈 한 자
2. 정학(수강중지를 명하고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, 무기정학은 15일 이상)
 - 가. 근신처분 2회를 받은 자가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
 - 나. 교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자
 - 다.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
 - 라. 불법집회, 결사, 폭력행위를 한 자
 - 마. 허가 없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배부 한 자
 - 바. 외설적 행위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
 - 사. 일과 중 음주 한 자
 - 아. 고의로 학교의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 한 자
 - 자. 시험 중 부정행위자

차. 기타 이에 준한 행위로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

3. 제적

가.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

나.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

다.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

라.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

마.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

제7조(자격상실)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 받은 특별 임무 또는 특전을 재학 중에는 상실한다.

제8조(상벌심의) 학생 상벌은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.

부 칙(1998. 6. 1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6. 28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